

공사 입찰 공고(긴급)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~ 복수면 교촌리 일원
- 다. 사 업 량 : 축제 및 호안 L=4.66km, 교량 5개소 등
- 라. 공 사 비

(단위: 원)

추정금액	도급공사비			관급자재	
(기초금액+도급자 설치)	기초금액	추정가격	부가가치세	도급자 설치	관급자 설치
16,008,900,000	12,443,700,000	11,312,454,546	1,131,245,454	3,565,200,000	48,200,000

- 마. 기초금액 : 금12,443,700,000원(금일백이십사억사천삼백칠십만원)
- 바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36개월(1,095일)
- 사. 수요기관 : 충청남도 건설본부(하천개발과)
- 아. 공사구분 : 종합공사(토목공사) ※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 허용
- 자.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
 - 종합공사업 : 토목공사업 금11,312,454,546원(100%)
 - 전문공사업 : ①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금2,642,265,388원(23.4%)
②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금8,670,189,158원(76.6%)

2. 입찰 및 계약방법

- 가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.
- 나. 제한경쟁(지역제한), 계속비계약, 적격심사 대상입니다.
 - ※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값(①국민연금보험료, ②국민건강보험료, ③노인장기요양보험료, ④퇴직공제부금비,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, ⑥안전관리비, ⑦품질관리비, ⑧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)은 3,816,870,835원입니다.
- 다.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.
 - ※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, 이메일 등 별도 제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(산출내역서 미첨부 시 투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찰 시 무효처리됩니다.)
- 라. 적격심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.
- 마.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,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.

3. 입찰서 개시·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

접수 개시일시	접수 마감일시	개찰일시	개찰장소
2026. 9. 14.(월) 17:00	2026. 9. 23.(수) 10:00	2026. 9. 23.(수) 11:00 이후	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

※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,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찰 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,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, **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)를 충청남도**에 둔 자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**[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]** 또는 **[전문공사업종 중 ①지반조성·포장공사업, ②철근·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]**
- 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「지방계약법」 제33조에 의거,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,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5.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

- 가.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**설계서 열람으로 갈음**합니다.
- 설계서 열람장소 : 충청남도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(☎041-635-7573)
- 나. 설계관련 자료(공사시방서, 공내역서)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, 공사시방서 및 공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.
- 다.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라며,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6.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

가.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1) 직접공사비

- 단위 작업량 :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(전기, 정보통신, 문화재 등의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)
- 노무비 :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
- 표준시장단가 :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

2) 간접공사비 :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비율

- 법정경비 :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,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, 환정보전비, 부가가치세
-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: 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공사이행보증수수료

7.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

가.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나.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
8. 공동계약 : 해당없음

9.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

가.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.

다.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, 동 납입 금액은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내 귀속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.

10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$\pm 3\%$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,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,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.
- 나.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다.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[별표1] ‘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’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1.99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1) **수행능력 평가**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,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종합공사업	전문공사업	
	토목공사업(100%)	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23.4%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(76.6%)
추정가격	11,312,454,546	2,642,265,388	8,670,189,158

- 2) **기술능력 평가**중 기술능력평가표의 “가~라” 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“마” 항목만 평가합니다.
- 3) **경영상태 평가**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.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.
- 4) **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(%)**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노무비(직접+간접)	기타경비	일반관리비	이윤	난이도계수
42.34	3.57	4.89	8.48	E등급(1.00)

- 5) 낙찰예정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**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**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**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(92점)**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
- 마.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**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**로 이루어진 **세부 공종의 합계액**(물량내역서 시트3. 표준시장단가)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합의 100분의 90(2,644,398,081원)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**2점 감점**합니다.
- 바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,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사.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(행정관리과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,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자.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(P.S, 잠정금액)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(단가)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,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잠정단가(PS) 관련 내용

(단위: 원)

항목	단위	수량	단가	금액
안전관리비	P.S	1	267,000,000	267,000,000
품질관리비	P.S	1	242,066,000	242,066,000
제경비제외공종	P.S	1	281,500,000	281,500,000
계				790,566,000

차.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·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.

구분	신기술·특허번호	신기술·특허명	보유자	비 고
각시바위교 (교량)	방재신기술 제88-4호	- 힘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	(주)길교이앤씨	
	건설신기술 제834호	-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한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		
	특허 제10-0969586호	-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		
교촌교 (교량)	방재신기술 제88-4호	- 힘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	(주)길교이앤씨	
	건설신기술 제834호	-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한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		
	특허 제10-0969586호	-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		
인도교 (교량)	방재신기술 제88-4호	- 힘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	(주)길교이앤씨	
	건설신기술 제834호	-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한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		
	특허 제10-0969586호	-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		

11.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

- 가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“12”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.
- 나.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·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다.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(입찰순위)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
12.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

- 가.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) 반영 대상 공사로,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(계약금액) 산정 시(산출내역서 포함)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
(단위 : 원)

국민연금 보험료	국민건강 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 관리비	품질 관리비
209,060,979	158,226,151	101,229,526	20,790,916	174,099,182	267,000,000	242,066,000

- 나.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, 사용내역서, 영수증,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.

※ 정산요령

-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.
 - ② 상용근로자(현장대리인 포함)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,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. 다만,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, “①” 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1)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, 환경보전비용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,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.
 - 2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 - 3)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 - 4)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, 정산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 및 [별표6]에 따릅니다.
 - 5)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「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에 따릅니다.

13.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

- 가.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, 건설기계 임차 시 **표준임대차 계약서** [공정거래위원회(<http://www.ftc.go.kr>)-정보공개-표준계약서-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]를 작성하고 **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**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(하수급 업체 포함)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(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)를 제출하고,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마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**충청남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**합니다.

14.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

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「출입국관리법」 및 「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,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(E-9)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(H-2)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5.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“9” (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)의 규정에 근거한 ‘**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**’ 대상 공사입니다.
- 나.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「**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**」를 작성하고 「**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**」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)

16. 하도급 관련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,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. 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 시행(2026. 8. 11.)에 따라,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, 계약상대자(원도급자)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「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 제8조에 따라,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%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.
- 라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,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,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마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바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7.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(하도급지킴이 시스템) 관련 사항

- 가.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,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,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나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,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”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 아울러,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- 다. 계약대상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 기반)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 또한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라.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마.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 청구 시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 ‘인출 제한’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바.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(☎1588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8.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나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,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「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9.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

- 가. 본 공사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.
- 나.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, 단말기를 설치·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,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0. 기타사항

- 가.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「국고금관리법」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,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.
-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.
 -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.
 -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도 거주자(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)를 고용을 권장합니다.

- 라.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,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(임대료)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·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·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별조건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·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, 조달업체 이용약관, 입찰공고, 과업지시서,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·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바. 시방서, 현장설명서,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(또는 적용례)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아.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2.5%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자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. 보충정보 제공처
-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: 행정관리과 계약팀(☎041-635-7536)
 -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공사에 관한 사항 :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(☎041-635-7573)
 -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: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(☎1588-0800)
 - 주 소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, 충청남도 건설본부

2026. 9. 14.

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

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약약서

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·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.

- 당 사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에 기반)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. 아울러, 하도급자(자재·장비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.

(※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, ‘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’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)

- 당 사는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.
 -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“인출 제한”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.
 -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.

20 . . .

서약자 : ○○회사 대표 ○○○ (인)
충청남도 재무관 귀하